이사회규정

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이사회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,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 이사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본사에서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 단, 제10조의 부의사항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- 제7조 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소집권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정기이사회는 1주일 전일까지, 임시이사회는 회일 전일까지 각이사에게 개최시기.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- 제8조 (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9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부의사항)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
- 1. 주주총회의 소집
- 2. 영업보고서의 승인
- 3.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
- 4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5. 공동대표의 결정

- 6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7. 신주의 발행
- 8. 사채의 발행
- 9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10.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11.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와 승인
- 12. 이익잉여금의 중간배당
- 13.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14. 삭제 (2001.5.29)
- 15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16.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
- 17.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 소각 결정
-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- 1.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회사의 예산·결산
- 3.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, 채무의 보증,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
- 5. 해외증권의 발행
- ③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- 1. 영업의 전부,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2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
- 3. 영업전부의 양수
- 4. 주식배당
- 5. 자본감소
- 6. 정관변경안
- 7. 이사의 보수안
- 8.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9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10.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
- 11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2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- ④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 (긴급집행)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2조 (위임)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 (삭제)

제14조 (경영진) ① 정관 제32조의3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
- ②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③ 경영진은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로 구분하며 회장, 부회장, 사장을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.
-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.
-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연임될 수 있다.
- ⑥ 경영진의 급여,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.
-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지급기준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

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, 이사회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경영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되지 못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8조 (이사회 지원) ①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때 소요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.

제4장 이사회내 위원회제도

제19조 (이사회내 위원회제도) ①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.
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결의할 수 있다.

제20조 (감사위원회)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르고,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21조 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)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 단,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